##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10

발의연월일: 2021. 4. 26.

발 의 자: 송갑석·김윤덕·김성주

이동주・황운하・이수진

민형배 · 조오섭 · 양정숙

이성만 의원(10인)

### 제안이유

정부는 효율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공업무 중 일부를 민간인에 게 위탁하는 한편, 이들의 부패행위 규제를 위해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엄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누락된 경우가 많아 부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및 대국민 정부신뢰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 업무 종사자를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엄중 처벌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 따라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아 수행하는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적합성확인기관 종사자가 공무원 의제 대상에서 누락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패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적합성확인기관의 관련 업무 종사자를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계량기 검정 또는 재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검정증인 형상을 임의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계량기 형식승인 취소에 관한 청문과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표시 제거명령에 관한 청문을 각각 형식승인기관의 장과 적합성확인 기관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여 청문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위승계 신고 의무 규정은 있는 반면 위반에 따른 처분 근거가 없는 지위승계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혈압계 등 의료기기 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일원화('15년)됨에 따라 의료기의 형식승인 면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제66조 및 제76조제2항제22호).
- 나. 계량기 검정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검정증인 표시를 위한 형상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72조제6호의2).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승인 기관·검정기관·적합성확인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형법」제129 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0

#### 법률 제 호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검정 및 재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검정 증인 표시를 위한 형상을 제작해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한다.
- ④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적합성사업자에게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 야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16조에 따라 형식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형식승인기관의 임ㆍ직
  - 2. 제26조에 따라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검정기관의 임ㆍ직원
  - 3. 제44조에 따라 적합성확인 업무에 종사하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임 •직원
  - 4. 제54조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
  - 5. 제6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 제7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2.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정 및 재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검정증인 표시를 위한 형상을 제작한 자
- 제76조제2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① (생	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u>&lt;</u> 삭 제>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계량기는 형식승인을 받은	
<u>것으로 본다.</u>	
③ <u>제1항 및 제2항</u> 에 따른 형식	③ <u>제1항</u>
승인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검정) ① 제조업자 또는	제23조(검정) ①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	
량기( <u>제15조제1항 및 제2항</u> 에	<u>제15조제1항</u>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	
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6	
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	
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검정증인의 표시 등) ①・	제29조(검정증인의 표시 등)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 ⑤ (생 략)

제66조(청문) ① 산업통상자원부 제66조(청문)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 문을 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 인의 취소
- 3. ~ 5. (생략)
- ② (생략)

<신 설>

<신 설>

③ 누구든지 검정 및 재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 표시를 위한 형상을 제작해서는 아니 된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 제>

- 3. ~ 5.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4조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 식승인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④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43 조에 따른 적합성사업자에게 제 48조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 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하려면 청 문을 하여야 한다.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 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 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2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 6. (생 략)

제) 감시원 및 제69조에 따라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 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 다.

- 1. 제16조에 따라 형식승인 업 무에 종사하는 형식승인기관 의 임ㆍ직원
- 2. 제26조에 따라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검정기관의 임ㆍ직 원
- 3. 제44조에 따라 적합성확인 업무에 종사하는 적합성확인 기관의 임ㆍ직원
- 4. 제54조에 따라 위촉된 감시 원
- 5. 제6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 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 · 직원

#72소(벌식)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7. ~ 16. (생 략)

제76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21. (생 략) <u><신 설></u>

③ (생략)

<u>6의2.</u>	제29	<u>)</u> 조제	3항을	을 위	반히	여
<u>검정</u>	및	재검	정을	회 2	디 <u>할</u>	목
적으	로 7	검정증	인 .	표시	를 위	한
형상	을 기	세작한	- 자			

7. ~ 16. (현행과 같음)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_\_\_\_\_
- 1. ~ 21. (현행과 같음)
-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

   위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
- ③ (현행과 같음)